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28

발의연월일: 2021. 6. 28.

발 의 자:허 영·김정호·노웅래

민병덕 • 박상혁 • 박홍근

송재호 · 윤후덕 · 이낙연

임호선 · 전용기 · 홍성국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운영과 자동차 제작결함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교환·환불중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할필요가 있음.

또한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게 된 위원회의 위원이 스스로 업무에서 회피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명단, 약력 및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알리는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 0명 이내로 확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 구성·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편익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 상수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32조의2제6항 신설).
- 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하는 하자차 량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등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중재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음(안 제47조의4제3항 신설).
- 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이내로 늘리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7제3항신설 및 제47조의8제1항).
- 라. 중재부의 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회의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참석 위원의 주요 이력, 기피 신청 등에 관한 절차를 통지해야 함(안 제47조의9제5항).
- 마.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신설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등 제척·기피·회피제도를 개선함(안 제47조의10제2항부터 제5항까지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1.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법인(「국세기본법」 제1 3조제2항에 따른 단체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 2. 하자차량소유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3. 하자차량소유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대여시설이용자
- 4. 변호사

제47조의4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중재에 필요 한 자료의 제출
- 2. 하자차량소유자의 하자차량 제시
- 3. 그 밖에 교환·환불중재 판정을 위해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47조의7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47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명"을 "1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7조의10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 5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7조의9제5항 중 "한다"를 "하며, 중재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첫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회의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 2.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 이력
- 3. 기피신청, 대리인 선임 및 분쟁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절차

제47조의10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를 "위원장에게"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인정하면"을 "인정하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다음과 같이 한다.

- 9. 최근 2년 이내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판매위탁계약, 부품공급계약 또는 제32 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 대행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10.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속한 법인 등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상법」에 따른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안 전·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⑤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하고,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10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척의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② 제47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	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의
	7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
	의위원회의 같은 조 제2항제2
	호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 등과
	<u>관련한 사항의 심의·의결에</u>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
	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
	를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
한 중재 신청 등) ①・② (생	한 중재 신청 등)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③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
	차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
	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
	로 소명하여야 한다.
	1.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
	제작자등이 법인(「국세기본

③ (생략)

④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 회는 교환·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 량소유자에게 <u>중재에 필요한</u>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 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한다.

<신 설>

<u>법</u> _	」 제1	3조제2항에	따른	단
체	등을	포함한다)역	인 경우	-에
는	그 임	<u> 직원</u>		

- 2. 하자차량소유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형제자매
- 3. 하자차량소유자가 「여신전 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 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 차의 대여시설이용자
- 4. 변호사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u>(5)</u>		 			
		 다음	각	호의	사항
	·				

1.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중재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신 설>

<신 설>

제47조의7(자동차안전·하자심의 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생략)

<신 설>

제47조의8(자동차안전·하자심의 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2. <u>하자차량소유자의 하자차량</u> 제시
- 3. 그 밖에 교환·환불중재 판 정을 위해 중재부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의7(자동차안전·하자심의 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 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 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은 자 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47조의	8(자동	차	간전 •	하지	나심.	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	-
			<u>-</u>	100명		

- 1. ~ 9. (생 략)
- ② (생략)
-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 되지 아니하다.
- 1. (생략)

<신 설>

2. · 3. (생략)

④ ~ ⑧ (생 략)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 영 등) ① ~ ④ (생 략)

⑤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이 소집한다. <단서 신설>

- 1. ~ 9.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3) -----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47조의10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 니하는 경우
- 2. · 3. (현행과 같음)
- ④ ~ ⑧ (현행과 같음)

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하며, 중재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첫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회의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 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 까지 통지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 ⑥ (생략)
-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 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생략)
 - ②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 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 8. (생략)

<신 설>

<신 설>

-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 2.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 요 이력
- 3. 기피신청, 대리인 선임 및 분쟁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절차
- ⑥ (현행과 같음)
- 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 1. ~ 8. (현행과 같음)
 - 9. 최근 2년 이내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 등과 판매위탁계약, 부품공급 계약 또는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 대행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10.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속 한 법인 등과 해당 사건이 발 생한 자동차제작자등이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 ③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u>자동</u> <u>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u> 직 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u>자동차</u> 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u>자동차</u>안 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피신 청이 타당하다고 <u>인정하면</u> 기 피의 결정을 한다. <단서 신설>

⑤ 위원은 제2항 또는 제4항의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수 있다.

법듈」에 따른 농일한 기업십
단에 속하거나 「상법」에 따
른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u>경우</u>
③
장은
4
위원장에
<u>게</u>
위원장은
<u>인정하면 자동</u>
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
을 거치지 아니하고 <u>다만</u> ,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
<u>정한다.</u>
⑤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
피하여야 하고, 제4항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